

● 제276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 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2017. 8. 3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성백진 의원 발의】

의안번호 1949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안자 : 성백진 의원 발의(찬성의원 11명)

나. 제안일 : 2017. 8. 7.

다. 회부일 : 2017. 8. 10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현행 조례 제15조에 따르면, 서울시복지재단(이하 “복지재단”이라 함)은 각 회계연도의 ‘연간 사업계획서’ 및 ‘예산서’를 해당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(제1항) 하고, ‘결산서류’의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(제2항)하여야 함.

하지만, 서울시에 제출하는 상기의 ‘사업계획서’ 및 ‘예산서’의 제출 시한은 서울시 예산의 편성·심의의결 절차와 시기 등을 감안할 때 그 현실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. 마찬가지로 ‘결산서’의 제출기한의 경우에는 법인세 확정 신고기한이 매해 3월말 인 점과,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시한의 경우에도 ‘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’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, 현행 조례상 제출기한은 실무적 이행과 관련한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상황임.

따라서, 본 개정안은 이상과 같은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복지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

#### 나. 주요내용

1)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 받도록 하고, 결산서류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15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- 개정안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서의 시장 승인 기한을 사업연도 ‘1개월전’에서 사업연도 ‘시작전’까지로 연장하고, 결산서류 제출시점도 사업연도가 끝난후 ‘2개월’에서 ‘3개월’로 완화하는 내용임.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<u>시작 1개월 전까지</u>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<u>또한 같다</u> .	제15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----- <u>시작 전까지</u> ----- ----- ----- <u>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
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<u>2개월</u>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2. <생략>	② ----- ----- -- <u>3개월</u> ----- ---. 1. ~ 2. (현행과 동일) <생략>

-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시장 보고시점과 결산서류 제출시점을 일치시키는 내용이라고 하겠음.
-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‘연간 사업계획서’ 및 ‘예산서 등’의 의회 보고시점을 보면,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이후 통상적인 예산안 심의절차에 따라 보고 등이 이루어지는 바, 개정조례안에 따르더라도 의회(상임위원회) 보고시점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###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6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###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5조 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2. (생략)

- 서울시 예산의 편성·심의의결 절차와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에 제출하는 상기의 ‘사업계획서’ 및 ‘예산서’의 제출 시한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,
- ‘결산서’의 제출기한의 경우에도 법인세 확정 신고기한이 매해 3월말이라는 점과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시한의 경우에도 ‘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’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, 행정의 일관성 및 통일성 등을 반영한 금번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.